

17세기 訓練都監 軍制와 都監軍의 활동

金 鍾 洙 (군산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訓練都監의 설립과 군제의 개편
3. 都監軍의 충원과 그 신분
 - 1). 都監軍의 募集과 陞戶制
 - 2). 都監軍의 身分과 生活 모습
4. 都監軍의 임무와 활동
 - 1). 都監軍의 임무
 - 2). 都監軍의 상업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창설되어 1882년 임오군란이후 군제 개편에 의해 소멸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존재하였던 조선후기 최대의 중앙군영이었다. 이 기간 동안 훈련도감은 서울에 常駐하면서 국왕의 시위, 서울의 경비와 방위 등을 담당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赴防의 임무 등도 수행하였다. 대내적으로 집권 세력의 권력 기반으로서 정치 질서와 권력 체계의 유지 발전에 주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외적의 방어에도 동원되었던 것이다. 비록 후에 御營廳과 禁衛營

이 증설되어 훈련도감은 이들과 더불어 都城 3軍門이라 칭해지면서 그 업무를 분담하였지만, 훈련도감은 首軍門으로 일컬어지면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18세기 이후 어영청과 금위영이 빈번히 실시되는 停番收布로 군사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훈련도감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훈련도감은 兵農分離制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선 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훈련도감은 군인 각자에게 무기와 軍裝, 馬匹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조선전기의 兵農一致的 軍役制와는 달리 모든 군사 물자를 확보하여 군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국가에서 군인들의 衣, 食, 主를 해결해 주어야 했으며, 이들에게 鳥銃, 火藥, 槍劍, 弓矢, 甲冑, 馬匹 등을 제작·공급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이는 국가와 民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이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또 대략 5,000명의 都監軍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조선후기 서울의 변화 발달에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훈련도감은 이와 같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중앙군영으로서 조선후기의 정치·경제·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조선후기 軍制의 변화나 軍需

1) 훈련도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柳承宙, 1969 『朝鮮後期 軍需鑛工業의 發展-鳥銃問題를 中心으로-』 『史學志』3

車文燮, 1970 『宣祖朝의 訓練都監』 『史學志』4

鑛工業의 발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훈련도감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훈련도감을 전적으로 다룬 논문은 車文燮 교수의 『宣祖朝의 訓練都監』이 유일한 형편이었다. 차문섭 교수는 이 논문에서 훈련도감의 設置沿革과 編制, 身分과 待遇를 서술하여 이 방면 연구를 개척하였으나, 이것은 宣祖朝의 훈련도감에 한정된 것이어서 훈련도감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선 17세기 훈련도감의 설립과 군제의 개편, 도감군의 충원과 그 신분, 도감군의 임무와 상업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도감군의 생활과 활동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후기 서울의 변모와 도성민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훈련도감은 경제적 기반으로 給料制와 給保制로 운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別稿를 통해 논할 예정이다.

2. 訓練都監의 설립과 군제의 개편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조선초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고 있었다. 조선초기 사회에서 군사의 비중은 적지 않았다. 甲士

李謙周, 1977 『壬辰倭亂과 軍事制度의 再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李泰鎮, 1977 『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李泰鎮, 1985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와 別侍衛 등으로 이루어진 16,000여 명에 달하는 武士가 있었고, 의무병으로서 군역을 수행하는 正兵 水軍과 諸色軍은 13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 正軍들은 각각 奉足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壯丁들은 다시 雜色軍으로 분류되었다. 즉 조선초기의 모든 양인 남자들은 군사조직에 편성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良人皆兵, 兵農一致制였다. 그래서 조선은 '軍國'²⁾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와 지주제의 전개, 농민층 분해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良人皆兵制, 兵農一致制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선초기의 중추적 군사력인 甲士가 소멸되고, 또 최대의 병력을 보유한 正兵 內에서 騎兵의 步軍化, 步兵의 收布軍化가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군역 근무형태에서도 代立制와 納布制가 實役을 대신하고 있었다. 군역제가 전반적으로 동요되고 있었던 것이다.³⁾ 이와 짝하여 16세기에는 성리학의 심화에 따른 賤武 의식이 만연되고 있었다. 이 시기 사회의 분위기는 '習俗이 讀書만 알고 兵은 모른다. 그래서 비록 하늘 天字만 알아도 貴人으로 대접받고 弓矢를 잡으면 賤하게 되는 것이 常例이다'⁴⁾라고 말해질 정도였다.

16세기 군역제의 동요와 賤武 의식의 만연 속에서 군사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임진왜

2) 『文宗實錄』 권1 文宗 즉위년 5월 壬申 6책 p.238 '我國本是軍國'

3) 16세기 군역제의 동요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李泰鎮, 1968 『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動搖』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拙稿, 1992 『16세기 甲士의 消滅과 正兵立役의 變化』 『國史館論叢』

4) 『宣祖實錄』 권45 선조 26년 윤11월 癸巳 22책 p.136

란을 맞이하였다.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시작된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왜군이 침공한지 20일 만에 서울을 내주는 등 참패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조선은 곧 의병의 봉기와 수군의 제해권 장악 그리고 明의 원병 파견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차차 戰列을 가다듬었다. 특히 조선과 明의 연합군에 의한 평양성 수복(1593년 1월 6~8일)은 역전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碧蹄館 전투 패배(1593년 1월 27일)이후 나타나는 明의 고의적 군사 행동 기피는 조선으로 하여금 明의 원병만을 바라볼 수 없게 하였다. 왜란 극복을 위한 주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책은 砲手의 양성과 軍制·軍役制 개혁 그리고 국왕의 侍衛와 서울의 警備 防衛 강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군사력 강화 방안은 훈련도감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훈련도감의 설립은 우선 砲手의 양성에서 비롯되었다. 임란 초전에서의 참패를 통해 조선정부는 鳥銃의 위력을 실감하였다. 유성룡은 『西厓集』에서 20일만에 서울을 내주는 참패는 실로 鳥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진단하였다.⁵⁾ 국왕 역시 '賊之全勝 只在於火砲'⁶⁾라고 이것을 인정하였다. 물론 조선에서도 조총과 같은 小火器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 말 이래 우수한 화약병기가 계속 발달하였고, 특히 16세기 말 임란직전에는 '勝字銃筒'이라는 소화기가 개발되었다,⁷⁾ 그러나 이것은 손으로 藥線에 불씨를 점화 발사하는 방식으로, 방아

5) 『西厓集』 권16 雜著 記鳥銃製造事 (한국문집총간 52책 p.320)

6) 『宣祖實錄』 권39 宣祖 26년 6월 壬子 22책 p.21

7) 조선초기 화약병기의 발달에 대해서는 許善道, 1968 「火藥兵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9 「韓國火器發達史上」 軍事博物館 참조.

쇠를 당겨 발사하는 조총에 비해서는 그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것마저도 당시의 주무기인 弓矢에 밀려 제대로 그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임란 초전에 조총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조선정부는 즉시 포수의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이 조총의 제조 및 사용법을 전수한 것은 왜란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2월이었다.⁸⁾ 선조는 이후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조총을 학습하도록 명령하였고, 조총의 사격술을 과거의 시취과목에 넣도록 지시하였다.⁹⁾ 이후 조선정부는 ‘破敵之技 莫踰於火攻’, ‘禦敵之用 莫過於砲手’¹⁰⁾라 하면서 포수양성에 주력하였다. 심지어 국왕 선조는 나라 안의 모든 군사들을 ‘皆化爲砲手’¹¹⁾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왜적을 진압하기 위해 포수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포수의 양성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선조 26년(1593년) 7월에는 새로운 軍制로서 포수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비변사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비변사의 제안이 관료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을 끌자, 선조 26년 8월 국왕 선조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라 하면서 ‘訓練都監’의 別設을 지시하였다.¹²⁾ 이것이 훈련도감 설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 다시 국왕은 군사훈련의 지침으로서 訓練都監事目を 발표하였다.¹³⁾

8) 『宣祖實錄』 권35 宣祖 26년 2월 乙未 21책 p.628

9) 『宣祖修正實錄』 권27 선조 26년 2월 25책 p.637

10) 『宣祖實錄』 권40 선조 26년 7월 庚辰 22책 p.54

11)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壬子 22책 p.21

12) 『宣祖實錄』 권41 선조 26년 8월 庚子 22책 p.78

13) 『宣祖實錄』 권41 선조 26년 8월 癸卯 22책 p.79

선조 26년 8월 국왕의 훈련도감 별설조치와 훈련도감사목 발표이후 훈련도감이 조직된 것은 그해 10월 선조의 還都 직후였다. 이때 영의정 柳成龍을 都提調, 武臣 趙徽을 訓練大將, 병조판서 李德馨을 有司堂上, 辛慶晉·李弘胄를 郎屬으로 각각 임명하고, 당시 도성의 飢民을 모집하여 그 군인으로 삼았다.¹⁴⁾ 즉 龍山에 있는 唐粟米 1천 石을 꺼내어 이를 기반으로 한사람 당 하루에 2升씩의 급료를 지급한다고 하여 군인을 모집하였다.¹⁵⁾ 이때 모집된 인원은 대략 500명 미만으로서 훈련도감에서는 이들에게 조총 사격술을 교습하였다. 이후 도감군은 1년도 안되서 사격 실력이 사격술로 유명한 명나라 浙江省의 군사들과 다름없다든지, 왜군보다 오히려 우수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다.¹⁶⁾

훈련도감이 鳥銃을 主武器로 사용하는 포수로 구성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군사의 편제와 전법이 채택되었다. 훈련도감 창설 당시 선조는 훈련도감사목에서 戚繼光의 敎士法을 소개하면서 이를 따를 것을 지시하였고, 都提調 柳成龍 역시 紀效新書에 따라 훈련시킬 것을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紀效新書』를 새로운 군사편제와 戰法의 지침서로 채택한 것이다.¹⁷⁾ 『紀效新書』는 明末의 장수였던 戚繼光이 남방의 왜구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창안한 禦倭의 要法으로 이름난 책으로서 束伍法과 三手技法을 그 요지로 하고 있었다. 속오법은 營-司-哨-旗-隊로 군대를 편제하였으며, 司에는 把摠, 哨에는 哨官, 旗에는 旗摠, 隊에는 隊摠을 각각 지휘관으로 두었다.

14) 『宣祖修正實錄』 권28 선조 27년 2월 25책 p.646

15) 『西厓集』 권16 雜著, 訓練都監 (한국문집총간 52책 p.325)

16) 『宣祖實錄』 권54 선조 27년 8월 丁未 22책 p.320

17) 『宣祖實錄』 권43 선조 26년 10월 丙戌 22책 p.108

또 삼수기법에는 조총수인 砲手와 弓兵인 射手 및 槍劍兵인 살수의 기예를 수록하고 있다.¹⁸⁾ 그런데 훈련도감은 『기효신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였다.

『기효신서』는 종래의 ‘多聚軍卒 則可以禦敵’¹⁹⁾이라 생각하던 大部隊단위 편제에서 ‘責任分明 哨隊有倫’하는 部分演習의 小部隊 단위 편제에 적합하도록 짜여진 것이었다.²⁰⁾ 여기에서는 將官과 哨官, 旗隊摠, 哨軍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지휘편제와 연대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효신서』의 부대편성은 조선초기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조선초기 五衛制에서의 부대편성 역시 卒→伍→隊→旅의 조직에 기반한 統→部→衛의 부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고정된 지휘관하의 책임분명한 조직이 아니었다. 조선초기에는 ‘無定將 無定卒’이라는 바와 같이 병농일치에 따라 군인들이 번상하면 그때마다 새롭게 군인을 편제하였고, 새로운 지휘관을 정하였다. 군제를 이렇게 편제한 이유를 磻溪 柳馨遠은 조선 건국시 麗末 私兵으로 인한 臣強의 폐단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²¹⁾ 유성룡도 국왕과의 대화에서

前朝인 高麗 때에는 權臣들이 兵權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我朝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폐단을 革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內患은 없었으나, 外處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出戰할 때 將帥는 있으나 그에 소속하는 병사가 없었던 것입니다.²²⁾

18) 車文燮, 앞의 글 p.162

19) 『宣祖實錄』 권56 선조 27년 10월 乙丑 22책 p.382

20) 車文燮, 앞의 글 p.161

21) 『磻溪隨錄』 권21 兵制 五衛

22) 『宣祖實錄』 권48 선조 27년 2월 丙子 22책 p.230

라고 하였다. 고려말 權臣이 병권을 잡는 폐단을 혁거하기 위한 조선초기의 사병 혁파 등의 조치는 국내 정치의 안정은 가져왔지만, ‘將不知軍 軍不知將’이라는 상황을 가져와 외적의 침입시 효과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초기 군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훈련도감에서는 책임분명을 강조하는 『기효신서』의 군편제를 도입하였다. 고정된 장수 밑에 고정된 병졸이 있어야 ‘將知其兵 兵知其將’²³⁾하여 효과적으로 應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수와 병졸의 직접적인 연결은 고려말 權臣이 兵權을 쥐는 현상을 재현시켰고, 정파간의 군권 경쟁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⁴⁾

창설 당시 훈련도감은 砲手로만 구성되어 속오법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그후 삼수기법에 입각한 기술적 필요에 따라 선조 27년(1594) 3월 임란중 동궁인 광해군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한 義勇隊를 殺手로 편입하였다.²⁵⁾ 그리고 그 해 6월에는 정원 외의 守門將·部長·內禁衛 등을 射手로 편성하였다.²⁶⁾ 이때 사수로 편입된 사람들은 飢民 등을 모집하여 편성한 포수·살수와는 신분이 다른 부류였다. 무사로서 禁軍에 비견되는 신분층이었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삼수병 중 포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우도 특별했다. 정부는 훈련도감 설립이래 여러 차례 試才를 실시하여 砲手 중 우수한 자에게는 除職·免賤의 특전을 베풀고, 兒馬·綿布 등을 賞賜하였다. 특히 국왕의 포수에 대한 관심

23) 『宣祖實錄』 권134 선조 34년 2월 己卯 24책 p.197

24) 李泰鎮, 1985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25) 『宣祖實錄』 권50 선조 27년 3월 癸卯 22책 p.242

26) 『宣祖實錄』 권53 선조 27년 7월 辛巳 22책 p.307

은 각별했다. 수시로 조총은 천하의 神器라고 하면서 조총 사격술이 능한 자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연습을 권장하라고 지시하였다.²⁷⁾ 그 후 이러한 특전은 살수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같은 도감군이라 하더라도 射手는 論賞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선조 28년 6월에 규정된 '賞格磨鍊規'에서도 사수는 탈락되었다.²⁸⁾ 이에 대한 사수들의 불만은 대단했다. 이들은 시정배와 아이들로 구성된 포살수들도 자주 賞을 받는데 자신들은 전혀 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차별 대우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선조 28년 9월 試官을 보던 李德馨은 사수들도 포살수와 동일하게 論賞할 것을 上啓하였다.²⁹⁾ 그러나 국왕은 '射者 我國長技 而砲殺 乃新學之事'라 하면서 포살수에 대한 특별 대우는 당연한 것이라고 못박았다.³⁰⁾ 이러한 국가의 정책 속에 사수들은 훈련도감에서 속속 이탈하여 갔다.

국왕의 사수 천시와 사수들의 훈련도감 이탈이 가속화하는 속에서 정부내에서 국왕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선조 28년 10월 司諫院에서는 다음과 같은 筭를 올리면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지금 훈련도감을 別設하여 砲手들을 敎習하니 그 練兵·務精의 뜻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砲와 射 두가지는 새의 양날개와 같아서 偏廢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砲·殺은 사람들이 다투어 學習하고 射手는 점차 생소하기에 이르니, 어찌 上의 좋아하는 바가 이렇게 편벽될 수 있습니까. 弧矢는 우리나라의 長技로서 歷代를 걸쳐 적을 물리친 것은 모두 이로써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왜적에게 패배한 것

27) 『宣祖實錄』 권64 선조 28년 6월 丙寅 22책 p.518

28) 『宣祖實錄』 권64 선조 28년 6월 丙寅 22책 p.518

29) 『宣祖實錄』 권67 선조 28년 9월 庚寅 22책 p.560

30) 『宣祖實錄』 권67 선조 28년 9월 丁酉 22책 p.566

은 人心이 굳세지 못하여 望風奔潰한 것이지 射의 罪가 아닙니다. 砲는 진실로 적을 막는데 뛰어난 것이지만 射 또한 권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듣건데 閭巷의 武士들이 모두 실망하여 解體하고 있다고 합니다.³¹⁾

무사들의 해체를 우려하는 이러한 사간원의 劄咨 이후에도 국왕의 사수 천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었다.³²⁾

정부 관료들의 위와 같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 정부는 弓矢를 위주로 하는 종래의 무기체제에서 銃砲를 위주로 하는 무기체제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포수들에 대한 우대는 당연하였다. 반면 이 당시 정부는 여전히 弓矢를 잡고 있는 武士까지 돌볼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포수들에게 지급하는 급료조차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속에서 무사의 해체는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선조 29년 2월 비변사는 ‘武士解體日甚’이라 하였고,³³⁾ 선조 33년 2월에는 무사들이 鄉曲에 숨어서 軍官을 假托하면서 閑遊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⁴⁾ 또 선조 36년 3월 都摠經歷 申晟은 가까이서 서울에서부터 멀리는 各道에 이르기까지 무사들이 農務에 급급하여 弓矢의 所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³⁵⁾ 이러한 상황들은 임진왜란까지 그나마 존재했던 우리나라 무사들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훈련도감은 이상과 같이 비록 삼수병으로 구성되었다 하나

31) 『宣祖實錄』 권66 선조 28년 10월 戊辰 22책 pp.588~589

32)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癸丑 22책 p.648

『東岡集』 권9 陳時務十六條劄(한국문집총간 50책 p.307)

33)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戊午 22책 p.651

34) 『宣祖實錄』 권122 선조 33년 2월 丙子 24책 p.35

35) 『宣祖實錄』 권160 선조 36년 3월 丁卯 24책 p.455

실제로는 포수 중심이었고 여기에 살수·사수가 첨가된 형태이었다. 그래서 훈련도감을 京砲³⁶⁾라고도 불렀고, 도감군은 砲手, 京砲手로 통칭되었으며 도감군의 보인을 砲保라고 칭하였다. 그런데 선조대 훈련도감에서는 이러한 삼수병 이외에 教師隊, 別武士, 兒童隊라는 兵種도 있었다.

三手兵은 모두 步軍으로서 禦倭에 주목적을 둔 편제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宣祖 말기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對女眞(後金·淸) 관계에서 步軍 중심의 훈련도감 군사편제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특히 여진족은 왜군과는 달리 騎馬 전술을 구사하였으므로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馬兵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선조 37년과 광해군 8년 두차례에 걸쳐 국왕은 禦倭의 목적으로 보군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에 추가로 馬兵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³⁷⁾ 그러나 이 당시 마병 설치 계획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등장한 仁祖와 西人들은 후금과의 대결 의식을 가지고 정부를 출범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인조 정부는 국방의 방향을 禦倭에서 防胡로 전환시키고, 지금까지 왜적에 대비하여 편제된 군사체제를 후금에 대비한 체제로 개편하려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都監所鍊 只禦倭之技 至於防胡之策 則在 練兵實紀'³⁸⁾라고 하면서 『紀效新書』에 따른 훈련도감 체제에 『練兵實紀』를 추가 적용하려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五衛陣法'을 복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³⁹⁾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

36) 李惟泰, 『草廬全集』 권3 己亥封事(忠淸文化研究所刊 上卷 p.70)

37) 『宣祖實錄』 권182 선조 37년 12월 壬戌 25책 p.11

『光海君日記』 권106 광해군 8년 8월 己未 32책 p.510

38) 『仁祖實錄』 권19 인조 6년 9월 丙戌 34책 p.294

조대에 훈련도감 마병의 설치가 실현되었다. 즉 마병 左·右 領 200명이 편성된 것이다. 그 후 인조 12년 5월 훈련도감은 無役人을 募得하고 또 도감군중 砲殺의 技가 뒤떨어지는 자를 골라 馬兵을 500명으로 증액하여 5哨로 편성하고, 이들을 『연병실기』에 따라 훈련시키자고 건의하여 마병의 확장이 이루어졌다.⁴⁰⁾

마병의 양성은 砲手 등의 步軍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우선 국가에서 각 군인들에게 말을 지급했다. 또 마병들이 말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이들에게는 보군보다 保人을 1명 더 주었으며, 급료에서도 콩 9~6斗를 추가로 지급하였다.⁴¹⁾ 한편 보군의 갑옷은 皮甲인데 마병은 鐵甲으로 만들어 지급해야 했다.⁴²⁾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효종대 북벌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계획할 때 훈련대장 李滄은 마병의 증액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⁴³⁾ 그러나 효종대에도 마병 1哨의 증액이 이루어져 마병은 모두 6哨로 편성되었다.⁴⁴⁾ 이후 17세기 내내 마병 6哨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 <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성되고 있다.

39) 『仁祖實錄』 권19 인조 6년 9월 丙戌 p.294

40) 『仁祖實錄』 권29 인조 12년 5월 己亥 34책 p.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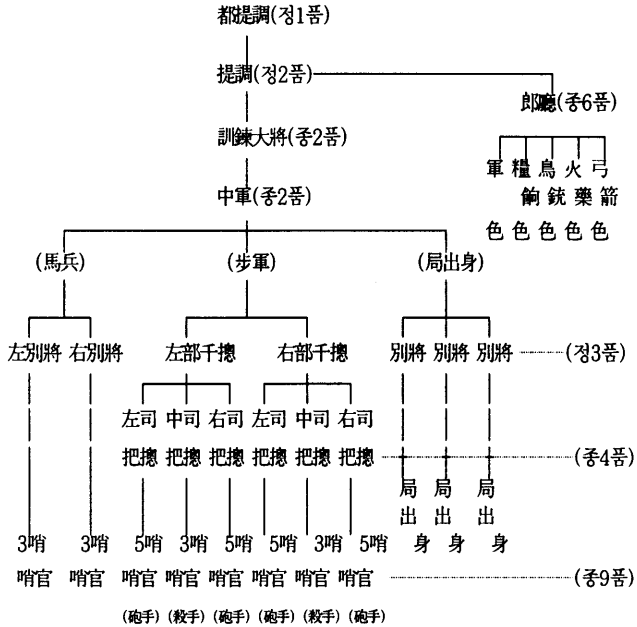
41) 『承政院日記』 125 효종 3년 9월 20일 7책 p.64

42) 『承政院日記』 128 효종 4년 8월 4일 7책 p.233

43) 『孝宗實錄』 권18 효종 8년 정월 丙寅 36책 p.75

44) 『顯宗改修實錄』 권10 현종 4년 11월 戊寅 37책 p.353

〈 표 1 〉 訓練都監의 指揮 編制(숙종 8년:1682)



훈련도감에는 步軍과 馬兵 이외에도 局出身이라는 兵種이 있었다. 45) 마병이 胡亂에 대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국출신은 호란이후 도감군의 戰功에 대한 일종의 포상으로 설치된 것이다. 병자호란 이듬해인 인조 15년(1637) 8월과 10월에 南漢山城에 扈從한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武科를 실시하였는데, 이 무과에서 도감군 1,384명이 합격하였다. 무과에 합격된 도감군들은 자신들은 이미 무과에 합격한 출신이므로 일반 도감군과는 구별하여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였

45) 局出身에 대해서는 李泰鎮, 1985 앞의 책 pp.152~153 참조.

다.46) 심지어 1,000여 명의 도감군들이 집단적으로 병조참지 兪伯曾에게 물려가 ‘豈有等第 而仍前役之理 初知有此事 豈爲 赴舉云云’47)이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出身 도감군의 항의와 소동 속에서 결국 ‘局出身’이라는 軍種이 설립하게 되었다. 인조 15년 12월 정부는 1,384명에 이르는 출신 도감군들을 7局으로 나누어 각각 別將의 통솔하에 永肅門에 入直하게 하였던 것이다.48) 그런데 국출신의 급료는 일반 도감군처럼 三手米로써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호조 재정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17세기 내내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호조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결원을 채우지 않으면서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7局으로 출발한 局出身은 효종 9년(1658)에는 4局으로 축소되었고,49) 다시 현종 4년(1663)에 이르면 3局으로 감축되었다.

그후 숙종초에 이르면 국출신은 도감군중 무과출신자의 입속처로 정비되어 자리잡게 된다. 숙종 2년(1676) 5월 공조판서 柳赫然은 도감군중 武科出身이 매우 많은데 이들의 소속처가 따로 없으므로 국출신 3국을 도감군 무과출신들의 입속처로 삼자고 하여 국왕의 허락을 얻었다.50) 이렇게 하여 국출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步軍, 馬兵과 더불어 훈련도감 편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출신은 무과출신이었으므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감군의 軍摠에

46) 『承政院日記』 61 인조 15년 10월 25일 3책 p.869

47) 『承政院日記』 62 인조 15년 11월 24일 3책 p.904

48) 『承政院日記』 62 인조 15년 12월 21일 3책 p.946

49) 『訓局事例撮要』 上卷 局出身條 (孝廟朝 9년 4월 24일)

50) 『訓局事例撮要』 上卷 局出身條 (肅廟朝 2년 5월 25일)

〈 표 2 〉 訓練都監의 員額과 軍摠 (숙종 8년:1682)

員 額		軍 摠
訓練大將	1 人	知穀官 10 旗牌官 20 隨率馬兵 30 大旗手 150 吹鼓手 150 巡令手 160 軍牢 130 大砲手 20 帳幕軍 55 坐纛手 10 塘報手 80 牙兵 70
中軍	1 人	隨率馬兵 10
馬兵 左·右 別將	2 人	隨率馬兵 各10 (合20) 吹鼓手 各40 (合80)
步軍 左·右部 千摠	2 人	隨率武士 各4 (合8) 吹鼓手 各39(合78)
把摠	6 人	標下 每司 各25 (合150)
哨官	33 人	馬兵 6哨 每哨 各119 (合714) 步軍 左部 左司 5哨 每哨 各113 (合565) 中司 3哨 每哨 各114 (合342) 右司 5哨 每哨 各113 (合565) 右部 左司 5哨 每哨 各113 (合565) 中司 3哨 每哨 各114 (合342) 右司 5哨 每哨 各113 (合565) 欄後別哨 111 (習陣時 倭軍으로 분장)
合計	45 人	合 計 5,000 名

* 〈표 1〉과 〈표 2〉는 『訓局事例撮要』上卷 創設條 (肅廟朝 8년 3월 16 일)에 나오는 軍摠數를 통해 작성한 것이다.

서는 제외되었다.

17세기 동안 훈련도감은 軍額의 변천과 더불어 끊임없이 軍制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특히 17세기 말에는 훈련도감의 축소·변통론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현종 10년(1669)

과 숙종 8년(1682)에는 대규모의 중앙 군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즉 현종 10년에는 訓練別隊가 편성되었고, 숙종 8년에 훈련별대는 다시 병조 騎兵을 선발하여 편성한 精抄軍과 통합되어 禁衛營으로 성립되었다.⁵¹⁾ 금위영의 성립을 통해 조선 후기 5군영제가 확립되었고, 또 훈련도감의 군제도 개정되었다. <표 1>과 <표 2>는 금위영의 성립으로 5군영이 완성될 당시 개정된 훈련도감의 지휘 편제와 員額軍摠이다.

3. 都監軍의 充員과 身分

1) 都監軍의 募集과 陞戶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련도감은 선조 26년 10월 선조의 환도 직후 설립되었다. 그리고 설립 즉시 훈련도감은 도성의 飢民을 모집하여 군인으로 삼았다. 당시 서울은 왜군의 1년여에 걸친 점령과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거리에 굶어죽은 시체들이 즐비할 정도로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서울의 기민 빈민들은 ‘人爭入屬’이라 하듯이 곡식을 얻기 위해 훈련도감에 다투어 입속하였다. 훈련도감 역시 急造된 것이어서 군인모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急於團取 勿論有無役 公私賤 竝爲收聚’⁵²⁾라는 바와 같이 응모한 사람은 役의 유무와 공사천을 가리지 않고 모집하여 그 군인으로 삼았다.

51) 訓練別隊의 창설과 禁衛營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李泰鎮, 1985 『17세기 朋黨政治와 中央軍營制』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pp.174~205

車文燮, 1973 『禁衛營 研究』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大出版部

52)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庚申 22책 p.652

훈련도감은 설립 당시 위와 같이 모집에 의해 군인을 충원하였다. 모집에 의한 중앙군의 충원은 조선전기이래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조선전기 대표적 중앙군인 甲士는 신분적 경제적 자격을 갖추고 엄격한 取材 시험을 거쳐 입속하였고, 正兵은 강제적인 役의 부과에 의해 군인이 되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임진왜란이 닥치자 왜적에 맞설 새로운 군대의 창설이 시급하였고, 募兵에 의한 군인의 충원이라는 형태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모병에 의한 군대의 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설립 직후부터 군인들은 급료 지급량이 너무 적다하여 불평하였고 심지어 훈련도감에서 도망하려는 자가 생겨나는 실정이었다.⁵³⁾ 그러나 대체로 훈련도감 설립시 모집에 의해 都監軍이 된 자들은 주로 허기를 면하기 위해 입속하였기 때문에 戰時의 '料薄役苦'한 도감군 생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무방비 상태로 맞이한 임진왜란 초기의 혼란이 지나가고 차츰 戰勢를 만회하면서 민생이 안정되어 갔다. 농촌 경제 역시 정상화되면서 米穀이 흔하게 되자 사람들은 도감군이 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도감군은 長番으로 조금도 휴식이 없었고, 또 훈련도감 將官들에 의해 여러가지로 侵害당하고 있었다.⁵⁴⁾ 이에 도감군들은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생계를 도모하려 하였다. 비록 왜란초에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훈련도감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보다 편한 생계 방도가 마련되어가자 여기에 들어온 것을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⁵⁵⁾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兵營에서 도망하였

53) 『宣祖實錄』 권43 선조 26년 10월 丙戌 22책 p.108

54) 『宣祖實錄』 권153 선조 35년 8월 辛丑 24책 p.404

55) 『宣祖實錄』 권135 선조 34년 3월 丁巳 24책 p.220

다. 선조 30년(1597) 5월 이항복은 도감이 설립한 이래 도망간 군사가 1,200여 명이 된다고 보고하였다.⁵⁶⁾

왜란후기부터 농촌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도감군의 도망과 이탈이 증가해가자 정부는 새로이 新兵 모집을 독려하는 한편 도감군의 軍籍을 작성하여 이들을 단속하려 하였다. 또 한편으로 도감군 중 우수한 자는 實職에 除授하거나 許通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군인들을 긴박시키려 하였다.⁵⁷⁾ 그러나 도감군의 이탈은 계속 되었다. ‘軍人之怨苦 日以益甚’⁵⁸⁾이라는 상황하에서 ‘訓練之局 日喪其旅’⁵⁹⁾라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도망군 증가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것은 훈련도감 군액의 결손뿐만 아니라 국가 기강과도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련도감은 선조 34년 3월 도망군을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여 각 지방수령으로 하여금 도망군을 잡아올리도록 하고 기한내에 1명도 잡아 올리지 못한 수령은 罷黜시키고 色吏는 全家定配하자고 하였다.⁶⁰⁾ 그러나 도망군 推捕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광해군 5년 12월 훈련도감은 도감설립 이래 도망군은 모두 1,644명으로 이중 1,140명은 居住不明으로 도저히 잡을 수 없으며, 단지 504명만은 推尋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⁶¹⁾ 그후 도망군에 대한 처벌은 ‘初逃則決棍 一百度 再逃則習陣之日 梟示警衆’으로 강화하였다.⁶²⁾ 이러한 軍律의 강화와 더불어 도감군에 대한 급료·급보제를

56) 『宣祖實錄』 권88 선조 30년 5월 丁巳 23책 p.232

57) 『宣祖實錄』 권102 선조 31년 7월 甲午 23책 p.467

58) 『宣祖實錄』 권153 선조 35년 8월 辛丑 24책 p.404

59) 『宣祖實錄』 권155 선조 35년 10월 庚寅 24책 p.417

60) 『宣祖實錄』 권135 선조 34년 3월 己亥 24책 p.209

61) 『光海君日記』 권73 광해군 5년 12월 辛亥 32책 p.270

62) 『承政院日記』 244 숙종 원년 정월 19일 13책 p.954

정비하여 도감군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려 하였다.

도망군 문제 이외에도 훈련도감은 군인중 노쇠·병약한 사람을 제대시키고 새로이 연소·강건한 신병을 모집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그러나 기존의 군인들도 도망하려는 실정인데 새로이 군인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선조 34년(1601) 8월 선조는 훈련도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物故, 老除된 자리에 새로이 군인을 添補시키지 않는다면 군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⁶³⁾ 따라서 훈련도감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순조로운 군액의 충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감군의 충원에 陞戶制를 채택하였다. 승호제 실시의 직접적인 동기는 후술하듯이 선조 36년과 선조 39년 도감군 중 궁가·권세가의 私奴 출신들이 입속하여 서울에서 횡포를 부리는 사건이었지만, 군인의 충원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승호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선조 39년(1606) 겨울이었다.⁶⁴⁾ 이로써 도감군은 각 지방에 군액을 할당하여 충원하였으며, 각 지방에서 도감군으로 지정된 사람은 '盡賣家藏田土'⁶⁵⁾라고 하듯이 家藏과 田土를 모두 팔아버리고 처자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 훈련도감에서 근무해야 했다. 그런데 종래의 모병과는 달리 승호제가 시행되자 이에 대한 관료들의 비판과 民人의 반발이 잇따랐다. 선조 40년 10월 開城府 留守 申集은 승호제를 자신의 고향에서 추방하는 全家移配와 다름없다고 비판하였고,⁶⁶⁾ 광

63) 『宣祖實錄』 권140 선조 34년 8월 癸巳 25책 p.290

64) 『光海君日記』 권21 광해군 원년 10월 庚午 태백산본 一. p.253

65) 『顯宗實錄』 권16 현종 10년 정월 丁巳 36책 p.609

66) 『宣祖實錄』 권217 선조 40년 10월 庚申 25책 p.368

해군 2년 3월 당시 훈련도감 제조로 있던 李恒福은 승호제의 실시로 ‘民의 원망이 朋興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⁶⁷⁾

관료들의 비판과 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 정부로써는 승호제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훈련도감은 당시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군대였다.⁶⁸⁾ 이러한 훈련도감의 군인을 충원하는데 승호제는 무엇보다 효과적이었다. 우선 각 지방관들은 ‘年少有根着 可堪哨軍者’를 뽑아 훈련도감으로 올려보내야 했고,⁶⁹⁾ 이렇게 하여 올라온 군인들은 각 지방에 근거가 있는 자들이므로 도망갈 염려도 적었다. 한편 승호제는 良人을 올려보내야 했으므로 도감군에 賤人이 입속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장점으로 승호제는 계속 추진되었고, 승호제의 실시로 훈련도감의 군액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한편 승호제도 차츰 정비되어 갔다. 승호제는 式年마다 실시되었는데, 이때 서울과 각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에 할당된 陞戶軍을 無役閑丁이나 束伍軍, 또는 砲保중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差使員을 붙여 식년 이듬해 9월까지 서울로 올려보내야 했다. 이와 아울러 승호군 1명당 3명씩의 포보도 갖추어 그 명단을 上送하였다. 서울과 각 지방에 할당된 승호군액은 훈련도감의 형편과 시기에 따라 변동되었으나 17세기에는 대략 230명선을 유지하였다.⁷⁰⁾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

67) 『光海君日記』 권26 광해군 2년 3월 壬寅 (태백산본) 一. 320

68) 『仁祖實錄』 권1 인조 원년 4월 丙子 33책 p.526 ‘若無此軍 則緩急無所恃’ 『承政院日記』 68 인조 17년 정월 15일 4책 p.241 ‘最爲可用之軍’

69) 『訓局事例撮要』 下卷 砲保條 (仁廟朝 8년 庚午 정월, 英祖 34년 12월 일)

70) 『訓局事例撮要』 下卷 砲保條 (孝廟條 3년 7월 25일)

각각 경기 20, 황해 35, 전라 50, 경상 30, 충청 40, 강원 20명씩 배정하였고 한성부와 개성에도 각각 30명, 5명씩을 배정하였다.⁷¹⁾ 한성부와 각도에 할당된 군액은 다시 한성부는 각부에, 각도는 각읍에 분정되었다.

훈련도감 군액의 충원은 식년 승호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매식년 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230명의 승호군으로는 부족한 군인을 채울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따라서 훈련도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 승호와 더불어 부정기적으로 別陞戶를 실시하였다.⁷²⁾ 특히 별승호는 효종대에 많이 실시되었다. 효종은 즉위이래 북벌 운동을 전개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효종은 재위 기간 내내 최강의 중앙 군영인 훈련도감을 보다 더 강한 군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⁷³⁾

특히 별승호 문제가 정부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효종 9년(1658)의 훈련도감 군액 증가 조치에서였다. 효종은 그 전해에 도감군 1만의 확보를 천명하고,⁷⁴⁾ 도감군 증액을 위해 일차적으로 포보중에서 精壯한 자 700명을 별승호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반발은 적지 않았다. 대사헌 金南重은 잇따른 흉년으로 백성들은 살기 힘들고 京中 米價 역시 등귀하여 면포 1필로 겨우 6~7승의 쌀을 살 수 있을 뿐인데 서울내에 이만한 군인을 모여들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승호 조치에 대해 반대하였다.⁷⁵⁾ 비변사 역시 비

71) 『承政院日記』 4 인조 3년 2월 3일 1책 p.90 : 『萬機要覽』 軍政編2 訓練都監 軍摠 陞戶 : 『增補文獻備考』 권116 兵考8軍門 訓練都監 陞戶

72) 『訓局事例撮要』 下卷 砲保條 (孝廟朝 3년 7월 25일)

73) 효종대 훈련도감의 增強 시도와 실패에 대해서는 이태진, 1985 『朝鮮後期の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pp.170~173 참조.

74) 『孝宗實錄』 권18 효종 8년 정월 丙寅 36책 p.75

록 승호군의 수는 700명이지만 그에 딸린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며 그러면 서울의 물가만 올려 主·客이 俱困한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년 가을을 기다려 실시하자고 상계하였다.⁷⁶⁾ 그러나 국왕은 승호제 실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효종의 집요한 훈련도감 군액 확대 의지는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던 송시열의 반대에 부닥치게 된다. 우선 송시열은 주자의 ‘添兵非難 養兵爲難’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증액한 도감군을 어떻게 먹여살릴 것이냐고 국왕에게 물었다. 그러나 효종은 ‘選兵之舉 出於不得已 今難更改矣’라는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⁷⁷⁾ 효종은 자신의 숙원인 북벌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감군의 증액은 부득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金堉은 자신의 임종 상소에서 ‘凶年 饑歲’로 民들은 散之四方으로 흩어지는 이 때에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호를 강행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⁷⁸⁾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 이와같이 효종 9년의 훈련도감 군액 증강 시도는 정부내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다. 북벌을 추진하는 국왕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이를 저지하던 신료의 대립이었다.

효종의 갑작스런 승하에 뒤이어 현종이 즉위하면서 前代의 군비 강화 정책은 개혁과 수정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현종 즉위년(1659) 12월 工曹判書 閔應亨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物故老弱者를 代充하기 위해 실시하는 式年 陞戶의 정지와 효종대 別陞戶로 올라온 700명의 도감군을 罷還할 것

75) 『孝宗實錄』 권20 효종 9년 8월 戊子 36책 p.151

76) 『孝宗實錄』 권20 효종 9년 8월 己丑 36책 p.151

77) 『孝宗實錄』 권20 효종 9년 9월 癸卯 36책 p.153

78) 『孝宗實錄』 권20 효종 9년 9월 己亥 36책 p.152

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는 호조의 1년 경비가 12만 석인데 軍餉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8만 석이라고 지적하면서 호조의 전체 경비 2/3를 차지하는 군비는 단연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그는 ‘國必自伐 而後人伐之’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도감군이야말로 ‘自伐之大者也’라고까지 하였다.⁷⁹⁾ 이때 右相 鄭維城 역시 閔應亨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軍容不入於國 而卽今持兵之士 滿於街路’⁸⁰⁾라 하였다. 지금 서울 거리에 무기를 든 병사들이 가득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종 즉위년부터 시작된 훈련도감 감축론은 현종 재위기간 내내 제기되었다.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도감군의 궤액을 보충하는 식년 승호조차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종 원년(1660) 9월 式年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승호를 실시하려 하자 承旨 兪燾는 이것의 정지를 촉구하였다.⁸¹⁾ 그러나 이러한 승호정지 요구는 훈련도감의 군액 유지를 원하는 국왕과 훈련도감 당국의 의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때 식년의 승호군이 도감군의 궤액을 미처 충당하지 못하자 서울에서 군인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즉 현종 3년 9월 이완은 도감군병의 궤액이 매우 많아 200여 명의 승호군으로는 이를 보충할 수 없어 서울에서 220명을 다시 募得하여 궤액에 충정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⁸²⁾ 이처럼 국왕과 李滄 등 훈련도감 당국자는 문반 관료들의 도감 감축론에 대립하여 도감군의 군액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관료들 역시 쉽게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

79) 『顯宗改修實錄』 권2 현종 즉위년 12월 甲寅 37책 p.136

80) 『顯宗實錄』 권1 현종 즉위년 12월 甲寅 36책 p.232

81) 『承政院日記』 164 현종 원년 9월 8일 9책 p.65

82) 『承政院日記』 권176 현종 3년 9월 5일 9책 p.746

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는 전염병과 대기근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유망자를 배출하고 있는 때였다. 따라서 군역 응역자는 감축하고 있었고, 良役變通論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훈련도감 변통론 역시 양역변통론의 일환으로서 그와 더불어 거론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양역변통론, 훈련도감 군역 감축론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서 현종 10년(1669)에는 訓練別隊, 숙종 8년(1682)에는 禁衛營이 각각 창설되고 있었다.⁸³⁾ 그리고 금위영이 창설되면서 훈련도감 군액은 5,000명으로 고정되었다.

2) 都監軍의 身分과 生活 모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훈련도감은 설립 당시 도성에 있던 飢民·流民을 모집하여 그 군인으로 삼았다. 그런데 비록 기민·유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 신분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훈련도감이 설립된 지 2개월 후인 선조 26년 12월 도감군에 대한 給賞 규정이 반포되었는데, 여기에는 훈련 받은 포수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官奴·私奴는 良人으로 만들며, 良人은 禁軍으로 제수하고, 禁軍이었던 자는 별도로 상을 준다고 규정하였다.⁸⁴⁾ 이를 통해 훈련도감의 창설후 모집된 군인내에는 관노·사노, 양인, 금군 등 다양한 신분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훈련도감 설립 당시 여기에 입속한 사람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수였고, 또 그들의 신분으로는 私賤이나, 서울의 하층민이 많았다.⁸⁵⁾

83) 訓練別隊와 禁衛營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李泰鎭, 1985 앞의 글 참조.

84) 『宣祖實錄』 권46 선조 26년 12월 壬戌 22책 p.185

이와같이 도감군은 양인과 천인이 함께 입속하였다. 여기서 私賤 등 천인이 훈련도감에 입속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⁸⁶⁾ 원래 조선전기 군역제는 良賤制에 따라 良人만이 군역부담자로 간주되었고, 賤人에게는 군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특히 조선전기 대표적인 중앙군인 甲士와 같은 경우는 양반자제나 閑良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서 갑사제는 쇠퇴되어 갔다. 이와 더불어 양반들은 군역에서 이탈되어 갔다. 이런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한 정부는 有·無役, 公私賤을 가릴 것없이 모두 收聚하여 군인으로 삼았다. 이로써 천인층도 군역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것은 조선전기 군역제 원칙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17세기 중반 草廬 李惟泰는 ‘兩班子支 不屬五衛 故宿衛不可廢 而新兵所以設也’⁸⁷⁾라 하여 양반들이 五衛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新兵 즉 훈련도감이 설립된 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훈련도감의 설립으로 私奴들이 여기에 입속하게 되자 奴主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일부 賤人 신분의 노비주 중에 자신의 노비를 진상하고 免賤되려고 하는 자도 있었으나,⁸⁸⁾ 대부분의 양반 노비주들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 일단 奴들이 훈련도감에 들어가면 양반들은 자신의 奴를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었다.⁸⁹⁾ 또 이들이 軍功이나 武才 등으로 양인이 되면 자

85) 『宣祖實錄』 권133 선조 34년 정월 丙辰 24책 p.183

『宣祖實錄』 권200 선조 39년 6월 甲寅 25책 p.210

86) 조선후기 私賤의 군역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平木實, 1982 『奴婢의 身分變化』 『朝鮮後期奴婢制研究』 지식산업사

全炯澤, 1989 『私奴婢政策의 轉換』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一潮閣

87) 『草廬全集』 권3 己亥封事 (韓南大學校 忠淸文化研究所刊 p.70)

88) 『宣祖實錄』 권83 선조 29년 12월 丁卯 23책 p.126

신들과는 영영 인연이 없게 되었다. 이에 양반 奴主들은 훈련도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고 관원들 역시 훈련도감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 실정이었다.⁹⁰⁾ 이들은 노에 대한 국가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인 노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주들은 자신의 노가 군인이 되면 그를 침략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⁹¹⁾ 한편 私賤들의 주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훈련도감에 들어온 군인들은 ‘率多叛主之奴’⁹²⁾라는 바와 같이 이들은 주인에 반항하면서 훈련도감으로 입속하였다. 이들은 자신을 침략하는 주인을 고발하였으며, 심지어 給保制의 실시에 따라 봉족을 정할 때 주인을 봉족으로 만들기도 하였다.⁹³⁾ 이와 같이 훈련도감에 사천의 입속이 허용되자 奴主와 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한편 이 시기 정부내에서도 훈련도감의 私賤 입속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거듭되었다. 이것은 차제에 노비제를 영구히 폐지하자는 노비제 폐지론과 노비제와 양반의 특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노비제 유지론의 대립으로 발전하였다. 전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趙守翼은 국왕과의 경연석상에서 도감군의 寡少함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노비제를 혁파하여 이들을 군인으로 흡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小臣이 생각컨대 私賤의 法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백성을 태어나게 하여 賦與한 것은 반드시 고른 것인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미 貴·賤으로 나뉘게 되니 이는 심히 말이 안되는

89)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庚申 22책 p.652

90) 『宣祖實錄』 권87 선조 30년 4월 壬申 23책 p.194

91) 『宣祖實錄』 권135 선조 34년 3월 乙丑 24책 p.226

92) 『宣祖實錄』 권113 선조 32년 5월 丁卯 23책 p.621

93) 『宣祖實錄』 권135 선조 34년 3월 癸丑 24책 p.214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비록 庸陋한 것이 많다고 하나 祖先이 약간의 奴婢라도 있으면 평생 편안히 앉아서 公侯의 樂을 누리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先儒가 말씀하시길 井田의 법은 반드시 天下 大亂後에 가히 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지금 나라의 정세가 위급한 지라 비록 노비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중국의 법과 같이 宰相以下에게는 그 거느릴 家丁을 나누어 주고 私賤은 영원히 革罷하여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94)

여기서 조수익은 논리적으로 노비제의 부당성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天下 大亂의 시기이니 노비제를 혁파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비제 폐지론자들은 도감금액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私賤太多 人役不均’에 있다고 보고 ‘有身則有役’의 원칙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5)

그러나 이러한 노비제 폐지론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관료들 대부분은 노비제 유지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사천의 입속도 허용하는 훈련도감의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奴主之分’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것으로서 노비제 유지의 명분을 찾았다. 96) 또 이들은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兩班不爲流徙 而小民皆逃亡者 何也 兩班則頗有與國 同休戚之心’ 97)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반만이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반의 특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노비제도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4) 『宣祖實錄』 권142 선조 34년 10월 己丑 24책 p.308

95) 『宣祖實錄』 권142 선조 34년 10월 丁丑 24책 p.303

96) 『宣祖實錄』 권65 선조 28년 7월 丙戌 22책 p.534

97) 『宣祖實錄』 권81 선조 29년 10월 丁卯 23책 p.80

이렇게 훈련도감에 사천의 입속을 허가하자 노주와 노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정부내에서도 노비제 폐지론과 노비제 유지론이 대립하였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사천 입속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선조 36년과 선조 39년의 宮家 私奴·投托人의 作弊 사건으로 인해 결국 奴主와 노비제 유지론자의 승리로 귀결되고 만다. 이 당시 여러 宮家에서는 사노, 투탁인을 동원하여 양민을 협박하여 토지를 빼앗거나, 사람을 잡아가두는 등 갖가지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런데 도감군 중에 貢家·권세가의 私奴·投托人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托稱宮奴 橫行閭里 尤甚作弊’⁹⁸⁾라 하듯이 자신들의 무력과 권세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閭里에서 作弊를 일삼으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선조 36년 10월 선조의 6男 順和君이 자신들의 노복과 무뢰배들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때 순화군의 노복과 무뢰배 안에 도감군들이 다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선조는 宗簿寺와 刑曹로 하여금 왕자가의 가택을 수사하여 이들을 일일이 잡아내어 효수에 처하라고 명하였다.⁹⁹⁾ 이후 훈련도감이 도감군 중 貢家の 사노, 투탁인의 명단을 보고하자 국왕은 이들을 嚴治하고, 이외에 私賤 신분의 도감군들을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앞으로 사천의 도감군 입속을 철저히 금지하라는 명을 내렸다.¹⁰⁰⁾ 훈련도감의 설립 이후 허용된 사천의 군역 입속은 宮家 私賤들의 작폐를 계기로 10년만에 다시 금지로 돌아선 것이다.

98) 『宣祖實錄』 권214 선조 40년 7월 乙未 25책 p.351

99) 『宣祖實錄』 권167 선조 36년 10월 甲申 24책 p.543

100) 『宣祖實錄』 권167 선조 36년 10월 戊子 24책 p.545

정부는 이와같이 궁가·권세가의 사노·투입인 사건을 계기로 사천의 도감군 입속을 嚴禁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 시기 도감군의 충원 방법을 개선하였다. 모집에서 강제적인 役의 부과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私賤 등 하층민을 제외한 일반 양인 농민들은 훈련도감에 입속하는 것을 ‘抵死窺避’¹⁰¹⁾ 했으므로 이러한 충원 방식의 전환은 불가피했다. 앞에서 살펴 본 선조 39년 陞戶制는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되었다. 승호제로써 私賤의 입속은 제도적으로 방지되었고, 그 대신 公賤이나 양인·농민들이 도감군으로 입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천들은 훈련도감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집에 응하여 끊임없이 도감군으로 입속하고 있었다. 비록 선조 36년 私賤 入屬을 勿許하고 기존 사천 신분의 도감군들을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왕명이 내렸으나, 이후에도 사천의 입속은 여전히 묵인되고 있었다. 심지어 도감군 중에는 官奴의 私奴인 자도 있었고,¹⁰²⁾ 私奴 출신으로서 軍공을 세워 禁軍으로 제수되고 6품으로까지 올라가는 자도 있었다.¹⁰³⁾ 이처럼 훈련도감은 일반 양인 농민이나 閑丁들은 극력으로 피하는 곳이었지만 사천 등 사회에서 賤待받는 사람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승호제 실시 이후 도감군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양인 농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私賤과 庶孽, 그리고 各軍子枝, 驛吏子孫, 各司典僕 등도 입속하였다. 특히 도감군 중에는 工匠도

101) 『光海君日記』 권26 광해군 2년 3월 壬寅 (태백산본) 一. p.320

102) 『承政院日記』 7 인조 3년 6월 18일 1책 p.267

103) 『承政院日記』 21 인조 6년 5월 22일 1책 p.974

다수 존재하였다.¹⁰⁴⁾ 이들은 근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수공업품을 제작하여 소득을 올렸다. 도감군 중에는 鑄字匠들도 많아 임진왜란이후 훈련도감에서 인쇄 업무를 도맡아 하기도 하였다. 도감군들이 제작한 활자는 선조 39년부터 효종 4년에 이르기까지 50여 년동안에 걸쳐 왜란중 散失된 經書 및 각종 詩文集등의 覆印사업에 이용되었다.¹⁰⁵⁾ 그러나 이러한 수공업 기술을 가진 도감군들은 훈련도감 將官들의 使役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승호제에 의해 군인이 된 사람들의 처지도 이전에 모집에 의해서 충정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각 지방에서 徵兵 抄送할 때 鄉所·色吏輩들의 농간으로 뇌물을 쓴 精銳 實軍들은 모두 빠져버리고 貧殘 下戶들만이 그 수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⁶⁾ 이들은 각 지방에서 힘없이 승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家藏과 田土를 모두 팔아버리고 처자를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여야 했다. 도감군 내에는 이와같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급료와 보포로는 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뒤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근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상업 행위를 전개하였다.

한편 17세기에 도감군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은 ‘沿江山底’¹⁰⁷⁾한 곳이나 東平館, 太平館, 慕華館, 禮賓寺 등의 空堡와 기타 각 아문의 空堡 등이었다.¹⁰⁸⁾ 17세기 후반에 가면

104) 『仁祖實錄』 권25 인조 9년 7월 庚辰 34책 p.436

105) 金斗鍾, 1966 『壬辰亂後의 活字印本實錄字와 訓練都監字』

『震檀學報』 29·30

106) 『宣祖實錄』 권95 선조 30년 12월 丁酉 23책 p.357

107) 『訓局事例撮要』 軍兵勿侵條 (顯廟條 11년 12월 10일)

이미 도성안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거주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승호로 인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도감군들은 沿江山底한 곳이나 각 관아의 공터에 立案을 제출하여 作家居生하였다. 때로는 집을 얻지 못한 도감군들에게 정부에서 집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효종대에는 승호 도감군들에게 창경궁 동쪽의 땅을 제공하여 거주하게 했던 것이다.¹⁰⁹⁾ 그리고 이들은 輦下親兵·宿衛之卒이라는 지위로 免稅·免役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도감군들은 여러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생활 모습도 다양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공업품을 제작하거나 상업 행위를 하면서 부수익을 올리거나, 각종 무과 시험에 代射를 해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다.¹¹⁰⁾ 한편 이들은 婢夫로서 사대부의 행랑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기도 하였다.¹¹¹⁾ 그러나 도감군 중에는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자들도 있었다. 17세기에 외방에서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온 사람이나 上番 군사들은 모두 서울에 올라와 主人家에서 숙박하였는데, 이러한 主人業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다.¹¹²⁾ 또 도감군 중에는 貢物 防納人도 상당수 있었다. 광해군 원년 10월 軍器寺 공물을 방납하는 포수 朱景多是 공물 납부를 지연하다가 이를 독촉하는 軍器寺 관원을 亂打하고 色吏의 귀를 자르는 등 횡포를 부려 治罪되었다.¹¹³⁾

도감군들은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108) 『訓局事例撮要』 軍兵勿侵條 (肅廟條 10년 2월 4일)

109)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5월 丁巳 46책 p.391

110) 『承政院日記』 156 효종 10년 4월 24일 8책 p.652

111) 『承政院日記』 193 현종 7년 3월 22일 10책 p.588

112) 『承政院日記』 205 현종 8년 11월 13일 11책 p.68

113) 『光海君日記』 권21 광해군 원년 10월 乙丑 (대백산본) 一. p.252

어서 이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는 무엇보다 강하였다. 이들은 조선전기 감사와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국왕에 대한 충성으로서 군역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생계 수단으로서 군역 근무를 하는 자들이었고, 급료 이외에도 군역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賞物이나 賞職 등을 원하였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면서 군역 근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¹¹⁴⁾ 또 도감군들은 기회만 있으면 보다 더 대우받는 軍職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광해군 원년 10월 훈련도감은 도감 설립 이래 55인이 兼司僕, 守門將, 忠贊衛 등의 軍職으로 移屬하여 군사력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군직에 이속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여 국왕의 허락을 얻었다.¹¹⁵⁾ 이때 도감군들은 병조 관리들과 결탁하여 타군직으로의 移屬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개별적 행동 뿐만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해 집단적 행동도 감행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局出身의 출현은 1,000여 명이 넘는 도감군들의 집단적 행동의 결과였던 것이다.

도감군은 신분적 상승을 도모할 뿐아니라 도성내에서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미천한 신분으로서 권력의 말단에 서자 자신을 顯示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서울 거리에서 때를 지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밤중에 공연히 총포를 쏘면서 도성민을 놀라게 하였다.¹¹⁶⁾ 심지어 자신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禁軍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거나,¹¹⁷⁾ 刑曹 禁吏를 잡아서 폭행하기도 하였다.¹¹⁸⁾ 또

114) 『宣祖實錄』 권88 선조 30년 5월 乙巳 23책 p.223

115) 『光海君日記』 권21 광해군 원년 10월 庚午 (태백산본) 一. p.252

116) 『承政院日記』 127 효종 4년 6월 20일 7책 p.208

도성내에서 사대부를 만나도 조금도 피하려는 기색이 없이 노려보고 지나가거나,¹¹⁹⁾ 사소한 일로 화를 내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사대부가에 突入하여 사대부를 능욕하기도 하였다.¹²⁰⁾ 한편 현종 7년에는 국왕의 온천 行幸을 수행하던 도감군 여러 명이 남편이 있는 村女를 劫奸하여 문제를 일으켰다.¹²¹⁾

이러한 도감군의 무력 과시와 난폭한 행동은 문반 관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문반 관료들은 도감군들을 ‘驕卒’로 인식하였고, 훈련도감의 축소 변통을 요구하였다. 현종 10년과 숙종 7년 송시열은 ‘訓練之軍 驕不可使 必須改爲軍制’라 하면서 훈련도감을 어영청과 같은 군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¹²²⁾ 그러나 국왕이나 훈련도감 당국자들은 어영군은 향곡 농부에 불과하다고 하고, 도감군은 서울에서 생활하여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有勝於外方之軍’이라 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¹²³⁾ 이러한 국왕의 지지 속에서 훈련도감은 중앙 최대 군영으로 계속 존속하였다.

4. 都監軍의 임무와 활동

1) 都監軍의 임무

(1) 국왕의 侍衛 : 도감군은 우선 국왕의 侍衛 임무를 맡고

117) 『承政院日記』 130 효종 5년 3월 13일 7책 p.343

118) 『顯宗實錄』 권7 현종 4년 10월 乙卯 36책 p.384

119) 『承政院日記』 131 효종 5년 5월 1일 7책 p.371

120) 『承政院日記』 189 현종 6년 6월 3일 10책 p.394

121) 『承政院日記』 194 현종 7년 4월 23일 10책 p.634

122) 『承政院日記』 212 현종 10년 정월 10일 11책 p.386

123) 『肅宗實錄』 권13上 숙종 8년 4월 甲辰 38책 p.588

있었다. 도감군의 국왕 시위 임무는 훈련도감 설립 즉시 부과되었다. 선조 26년(1593) 10월에 설치된 훈련도감의 포수들은 2개월후인 그해 12월 각처의 戰場으로 보내지고 있었지만, 또한 貞陵洞에 있는 국왕의 行宮을 侍衛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¹²⁴⁾ 한편 선조 27년 정월에 국왕은 도감군 入直을 정식으로 명하고, 입직 규정을 정하였다.¹²⁵⁾ 이것은 훈련도감의 설치 목적이 우선 국왕의 시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壬亂 시기 도감군은 ‘常時入直 只砲殺手 數十人外 無一軍士’¹²⁶⁾라고 하는 바와 같이 국왕의 시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감군의 평상시 임무는 禁軍과 더불어 국왕의 殿座 주위를 호위하며, 궁궐 각문을 把守·入直하는 것이었다.¹²⁷⁾ 국왕이 궁궐 내를 거동할 때 국왕 측근에서 그 시위 임무를 하였고, 국왕이 거주하고 있는 궁궐문을 파수하면서 雜人の 출입을 금하였다. 도감군은 궁궐 내에서 뿐만 아니라 궁궐 밖에서도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自亂後 一應舉動時 以訓練都監隊伍軍 侍衛’¹²⁸⁾라고 하는 바와 같이 壬亂 전에는 병조의 番上兵에 의해 충당되던 국왕의 시위는 임란후 도감군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국왕이 사신의 영접, 陵幸, 온천 행차 등으로 궁궐 밖으로 거동할 때 도감군은 행렬 앞에서 국왕의 행차를 알리는 僻除와 행차 상황을 알리는 傳語軍으로 활동했고,¹²⁹⁾ 행렬 중간에서는 국왕의 전·후·좌·우에서 국왕을 호위하였

124) 『宣祖實錄』 권46 선조 26년 12월 丁卯 22책 p.188

125) 『宣祖實錄』 권47 선조 27년 정월 壬辰 22책 p.203

126) 『宣祖實錄』 권69 선조 27년 9월 壬寅 22책 p.355

127) 『萬機要覽』 軍政篇2 訓練都監 陪扈

128) 『宣祖實錄』 권142 선조 34년 11월 丙午 24책 p.316

129) 『承政院日記』 17 인조 5년 5월 1일 1책 p.824

다.130) 물론 17세기에 들어 훈련도감 이외에도 御營廳, 精抄廳(禁衛營) 등 군영이 증설됨에 따라 도감군은 이들과 업무를 분담하게 되지만 국왕의 호위에서 도감군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감군은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왕이 거주한 궁궐 전체의 수비를 맡기도 하였다. 선조 34년(1601) 정월 명나라 도망군이 도성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도감군 600명이 吹角令에 의해 즉시 聚會結陣하여 궁궐 앞에서 국왕을 호위하였고, 일부는 명의 도망군을 소탕하는 활약을 벌였다.131) 광해군 5년(1613) 4월에는 이른바 ‘七庶之獄’이라고 불리는 朴應犀, 徐羊甲 등의 모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감군은 궁궐 전체의 방위에 들어갔다. 이때 銀을 모아 仁穆大妃의 아버지인 金悌男을 영입하고 永昌大君을 국왕으로 추대한다는 박응서, 서양갑의 공초 내용은 당시의 朝野에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이 사건으로 결국 김제남이 賜死되고 영창대군이 廢庶·살해되지만 광해군은 사건 발생 시기부터 도감군으로 하여금 무려 3개월 동안 주야로 궁성을 둘러싸서 방위하도록 하였다.132) 이때 도감군은 장마비가 쏟아지고 흙탕물이 넘쳐나는 궁궐 담 밖에서 주야로 경계 근무를 하였다.133) 도감군이 비상시 주야로 궁궐 전체를 방위하는 모습은 비단 이때 뿐이 아니었다. 17세기에 모역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도감군은 국왕의 측근에서 호위의 임무를 담당하

130) 『承政院日記』 27 인조 7년 7월 24일 2책 p.256

131) 『宣祖實錄』 권133 선조 34년 정월 癸卯 24책 P.175

132) 『光海君日記』 권66 광해군 5년 5월 壬戌 (태백산본) 二. p.93

133) 『光海君日記』 권68 광해군 5년 7월 己卯 (태백산본) 二. p. 152

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向背는 정권의 운명과 관계되었다. 만약 이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현정권에 반기를 들었을 때 그 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 문반 관료들은 끊임없이 ‘兵猶火也 不戢將自焚’이라는 『左傳』의 말을 인용하면서 군의 축소와 통제 감시 등을 주장하였다.¹³⁴⁾ 실제 仁祖 反正時 반정주모자들은 ‘都監軍 可畏’라고 하면서 반드시 도감군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야 반정이 성공된다고 말하고 있다.¹³⁵⁾ 또 실제 그리하여 반정은 성공되고 인조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인조 2년 정월에 일어난 李适의 난 때에 무려 800명의 도감군이 국왕의 扈駕에 응하지 않고 도망하였다.¹³⁶⁾ 즉 이들의 정치적 향배는 시류에 따라 浮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17세기의 크고 작은 謀逆 사건에서 도감군과 그 將官들이 연루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살펴본 광해군 5년의 ‘七庶之獄’ 사건에서 朴應犀, 徐羊甲 등은 金悌男이 자신의 측근으로 하여금 훈련대장으로 삼아 거사를 도모하려했다고 말하고 있다.¹³⁷⁾ 또 인조 6년 정월 李友明, 柳孝立 등이 선조의 7남인 仁城君을 왕으로 추대하여 謀反聚軍하고 있다는 역모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역모자들이 훈련도감 中軍, 千摠, 把摠등과 연결하여 도감군들을 동원하려 했다고 한다.¹³⁸⁾ 또 인조 22년 3월에 발생한 沈器遠 역모사건¹³⁹⁾에서도 이 사건을 고변한 行護軍 黃灑, 李元老 등

134) 『孝宗實錄』 권9 효종 3년 10월 庚申 35책 p.580

135) 『仁祖實錄』 권1 인조 원년 3월 癸卯 33책 p.501

136) 『仁祖實錄』 권7 인조 2년 9월 庚午 33책 P.643

137) 『光海君日記』 권66 광해군 5년 5월 壬戌 (태백산본) 二. p.93

138)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정월 乙丑 34책 p.246

139) 沈器遠 逆謀事件에 대해서는 이태진, 1985 앞의 책, p.143~145 참조.

은 심기원이 자신의 측근인 哨官 金應鉉으로 하여금 포수 100명을 이끌고 弘化門을 열게하여 外兵을 끌어들이어 인조를 폐위시키려는 계획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¹⁴⁰⁾ 이러한 역모 사건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들 사건에서 항상 도감군과 그 將官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도감군의 정치적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감군의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왕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부심하였다. 정부는 도감군의 정치 개입의 차단, 군율의 강화와 아울러 도감군에 대한 優待조치라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도감군의 정치 개입의 차단은 선조 대부터 강경하게 취해졌다. 선조 33년 6월 훈련도감의 哨官들이 도감군을 이끌고 병조판서 洪汝淳을 治罪하라는 등 국내 정치에 간여하여 상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국왕은 이들 哨官을 잡아들여 推鞠定罪하라고 지시하였다.¹⁴¹⁾ 선조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지금 懲治하지 않으면 군인들의 발호가 점점 거세어 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처벌할 것을 고집하였다.¹⁴²⁾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려 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도감군의 정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哨官들이 명령 계통을 따르지않고 자신의 직속 도감군들을 움직이는 것도 금지되었다. 인조 20년 3월 右司前哨官 崔鳴後가 李适의 난 때 軍官으로 활약한 張天奎가

140) 『承政院日記』 88 인조 22년 4월 16일 5책 p.200

141) 『宣祖實錄』 권125 선조 33년 5월 申酉 24책 p.72

142)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癸酉 24책 p.75

사직동 근처에 있는 그의 어머니 집에 몰래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급히 잡기위해 훈련대장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초군들을 동원하여 張天奎를 잡았다. 그러나 그후 최명후는 훈련대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초군을 움직였다하여 처벌을 받았다.¹⁴³⁾ 비록 역적을 체포하는 일에도 명령 계통에 따라 군대를 發兵시켜야 했다. ‘訓練之兵 雖大將 亦不敢擅發’이라하여 훈련대장도 마음대로 도감군을 동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감군들은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정치 개입도 서슴치 않았다. 즉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국왕을 시위하며 전투를 수행하던 도감군들은 자신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가망없는 전쟁에 반대하여 斥和臣을 淸側에 縛送하여 전쟁을 중지하자는 집단 시위를 벌여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맺게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¹⁴⁴⁾

도감군은 이와같이 국왕을 시위하고 정권의 안보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군인보다 우대를 받았다. 이들은 국가에서 의, 식, 주를 해결해 주었고, 免稅·免役의 혜택도 받았다. 또 국왕의 親兵이라하여 犯法으로 인한 처벌에서도 특별대우를 받았다.¹⁴⁵⁾ ‘雖或有罪犯 量施他罰’이라하여 죄를 지어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배려되었던 것이다. 또 이들은 試才·武科 등에도 참여하여 우수한 자는 除職·免賤되었고 兒馬·綿布등도 상으로 받았다. 국왕은 수시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왕과 훈련도감 당국은 도감군과 관련된 각종 국가

143) 『承政院日記』 81 인조 20년 3월 4일 4책 p.899

144)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정월 丙寅 34책 p.670

145) 『光海君日記』 권103 광해군 8년 5월 丁丑 32책 p.474

정책에서 이들을 적극 비호 두둔하였다. 이러한 대우를 통해 도감군은 국왕과 집권 세력의 권력 기반으로 정치 질서의 유지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2) 서울의 防衛와 警備 : 국왕의 시위에 이어 도감군의 중요한 임무로는 서울의 경비와 방위를 들 수 있다. 壬亂中 뿐만 아니라 亂後에도 도감군은 국왕 시위의 임무와 아울러 국왕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경비와 방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¹⁴⁶⁾ 도감군의 서울 경비와 방위는 5營의 설치로 체계화되었다. 선조 27년 4월 유성룡은 서울이 안정되어야 外方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서 5영의 설치를 건의하였고,¹⁴⁷⁾ 그해 11월에 가서야 실현되었다. 이 때 5영의 설치 상황을 보면, 5영을 前(南)·後(北)·左·右·中營으로 나누어 여기에 포수 1초와 살수 1초 씩을 入番시켰다. 그리고 前營(또는 南營이라함)은 南大門內, 後營(또는 北營이라함)은 宗學 근처, 左營은 東大門內, 右營은 西小門內, 中營은 南別宮 근처에 설치하였다.¹⁴⁸⁾ 도감군을 여기에 각각 分屬하였고 도감군의 旗幟 服色도 각 방위별로 구분하였다. 도감군은 5영에 입직하면서 서울의 경비와 방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여기에 입직하면서 도적의 방비와 체포, 화재 예방 등의 임무를 맡아보았다.¹⁴⁹⁾ 도감군이 입직하는 5영은 그 후 北營, 南營, 廣知營, 新營, 下都監 등으로 바뀌게 된다.

도감군은 5영에 입직하여 경비와 방위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울안의 도적을 잡는데 동원되기도 하였다.

146) 『宣祖實錄』 권153 선조 35년 8월 辛丑 24책 p.404

147) 『宣祖實錄』 권50 선조 27년 4월 乙丑 22책 p.254

148) 『宣祖實錄』 권57 선조 27년 11월 癸巳 22책 p.403

149) 『承政院日記』 45 인조 12년 12월 18일 3책 p.32

원래 도적을 잡는 일은 捕盜廳에서 관장하였으나 포도청이 부실하고 도적이 橫行할 때 도감군이 그 업무를 대행하였다.¹⁵⁰⁾ 인조 5년이후 도감군의 巡邏는 정례화되어 갔다. 이때 도성 내외에 馬盜賊들이 횡행하여 士族, 婦女, 朝官들이 말을 타고 가면 이를 빼앗는 일이 빈발하자 정부에서는 도감군들로 하여금 다시 가로를 순라하게 하였다.¹⁵¹⁾ 그후 도감군은 서울의 各坊들을 巡邏하였고, 어영청·정초청 등이 설립된 후에는 이들과 분담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⁵²⁾ 이상과 같이 도감군은 5명에 입직하여 서울의 경비와 방위를 담당하였고 또 捕盜와 巡邏업무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3) 赴防 : 도감군은 국왕의 시위와 서울의 경비·방위와 더불어 외적의 방어를 위해 赴防도 하였다. 도감군의 부방은 이들이 壬亂時 각 戰場에 투입되었던 것에서 비롯된다. 선조 27년 7월 영의정 유성룡은 도감군 600명중 270명이 경상도 등 각 처의 전장에 투입되어 서울에 남아있는 인원은 단지 33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있다.¹⁵³⁾ 당시 도감군 군액의 절반 가량이 각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감군의 지방 파견은 임란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도감군은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 상주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 군인이었다. 따라서 도감군이 지방으로 파견되었을 경우 급료는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이렇게 赴防軍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妻料라고 한다. 지방에 파견되는 도감군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급한 식량을 가지고 가거나,

150) 『承政院日記』 7 인조 3년 6월 17일 1책 p.266

151) 『承政院日記』 17 인조 5년 정월 20일 1책 p.800

152) 『訓局事例撮要』 上卷 巡邏條 (顯廟朝 11년 10월 27일)

153) 『宣祖實錄』 권53 선조 27년 7월 己卯 22책 p.306

각 지방의 군량으로 현지에서 생활하였고, 그의 월급은 서울에 거주한 처자들의 생계를 위해 급료 전체가 가족들에게 지급되었다.¹⁵⁴⁾

임란이 종결된 후에도 도감군의 부방은 중지되지 않았다. 다시 여진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北道로 赴防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도감군의 북도 부방은 선조 32년 7월 함경도 부방을 위해 500명이 파견된 것으로 시작하였다.¹⁵⁵⁾ 그후 북도 부방은 계속되어 선조 33년 정월 ‘都監砲手 北道赴防外 現存者 無多’¹⁵⁶⁾라 할 정도였다. 북방의 정세가 위급할 때는 증액하기도 했지만, 선조 23년부터 선조 말까지 대략 150~200명의 도감군들이 교대로 부방하였다. 그러나 교대가 순조롭게 시행되지 않아 도감군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¹⁵⁷⁾ 도감군의 부방은 인조대에 들어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고 보다 체계화하였다. 인조대는 친명배금 정책을 표방하면서 정권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예상되는 후금의 방어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다. 이 시기 도감군의 부방은 例防과 別防으로 구분되었다. 例防은 연례적으로 하는 부방으로서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물이 얼어붙는 동절기에 실시되었다. 예방에는 대개 도감군 1~3哨가 동원되었다.¹⁵⁸⁾ 한편 別防은 정세가 위급할 때 수시로 실시하는 부방이었다. 그러나 인조대에 들어 후금의 침입이 끊임없이 우려되는 속에서 부방 군인의 교체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그 군인의 가족들이 관청으로 몰려와 도감군을

154) 『仁祖實錄』 권7 인조 2년 9월 壬子 33책 P.639

155) 『宣祖實錄』 권115 선조 32년 7월 丙子 23책 p. 656

156) 『宣祖實錄』 권121 선조 33년 정월 丁卯 24책 p.27

157)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己卯 24책 p.76

158)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8월 丙辰 34책 P.132

빨리 교체하여 이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다.¹⁵⁹⁾ 이후 도감군의 赴防은 병자호란에서의 항복으로 병자호란 이듬해인 인조 15년(1637) ‘無防守之事’¹⁶⁰⁾라는 이유로 종료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감군의 임무로는 국왕의 侍衛, 서울의 방위와 경비, 赴防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도감군에게는 끊임없는 무예 훈련도 요구되었다. 이들은 私習이라하여 1개월에 4차례의 무예 연습을 하였고, 入直 근무마다 궁궐내의 後苑에서 中日 試放을 해야 했다. 또 매월 2차례의 射講, 中旬, 觀武才, 서총대, 試射, 매월 1~2차례 노량진 백사장에서 실시하는 習陣에도 참여해야 했다. 또 서울 근교에서 실시하는 打圍·出獵에도 동원되었다. 한편 도감군은 이러한 정규 임무 이외에도 각종 잡무에 시달렸다. 서리 사환이나 根隨 帶行으로 불러다녔던 것이다.¹⁶¹⁾

2) 都監軍의 상업 활동

도감군들은 주로 서울의 빈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군역 복무실태도 조선 전기와 같지 않았다. 감사와 정병으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의 중앙군들은 대체로 지방에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로서, 당번이 되면 騎馬와 卜馬 그리고 從者를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와 군역 근무에 임했다. 즉 조선전기의 중앙군들은 지방에서 米布를 가져와 서울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의 군역 근무만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훈련도감 군인들은 이와 달랐다. 이들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상경하여

159) 『承政院日記』 40 인조 11년 8월 4일 2책 p.843

160) 『承政院日記』 권56 인조 15년 3월 28일 3책 P.633

161) 『宣祖實錄』 권209 선조 40년 3월 丙寅 25책 P.313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군역 근무에 임했다. 그런데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급료와 保布가 서울 생활에 충분하지 않자 이들은 군역 근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왜란중에는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백관의 녹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도감군의 급료는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에 ‘料薄役苦로 도망가는 군사가 속출하였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도감군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 심지어 국가에서 賞으로 받은 말을 팔아 식량을 구입한다고 할 정도였다.¹⁶²⁾ 그런데 임진왜란이 종결되고 明兵이 철수 준비를 하자 국왕 선조는 수도경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훈련도감의 제도 정비와 아울러 도감군의 상업 행위를 근절하고, 屯田으로써 도감군의 생계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¹⁶³⁾

그러나 둔전을 통한 양병의 계획은 조선 사회에 많은 폐단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도감군의 양성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이외에 각종 漁場, 鹽田을 통해 養兵의 재원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이는 훈련도감의 운영 경비에 겨우 충당될 뿐이었다. 선조 35년(1602)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1결당 1斗씩을 걷는 三手米稅를 창설하여 도감군의 급료를 지급하였다.¹⁶⁴⁾ 이로써 금군 도감군은 1개월에 12斗, 한량 도감군은 1개월에 6두(후에 9두로 인상됨)씩의 급료를 지급하였다. 급료 지급과 더불어 정부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

162)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己亥 22책 p.645

163) 『宣祖實錄』 권107 선조 31년 12월 己巳 23책 p.545

164) 『宣祖實錄』 권203 선조 39년 9월 丁亥 25책 p.267

고 給保도 추진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선조 34년 2월 도감군 1인당 3명의 보인을 확보하게 하여 도감군은 1년에 9필의 면포를 지급받았다. 즉 도감군은 1개월에 米 12~6斗, 1년에 면포 9필을 지급받고 서울에 상주하면서 군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官給料布 不足以資其生理’ 혹은 ‘所給料布 歲難支過’라고 말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급료와 보포로도 도감군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재정 지출을 할 수 없었던 국가로서는 도감군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市役을 專減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一結 復戶한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다시 선조 33년(1600)에는 도감군이 아닌 자들이 도감군이라 칭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자 容貌把記를 적은 市牌를 成給하였다.¹⁶⁵⁾

宣祖代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허용할 때에는 市塵과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때는 왜란직후이어서 물자가 귀했고 경제 활동이 미약하여 시전과의 대립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光海君代를 거쳐 사회가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전과 도감군의 상업 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들 간에 상업 활동의 전개와 정비례하여 마찰과 분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인조 3년(1625) 도감군의 親屬들이 가명으로 장사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전을 도감군들이 亂打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고될 정도였다.¹⁶⁶⁾

이러한 도감군의 상업 활동에 대해 國役을 부담하는 시전측

165)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 (仁廟朝 12년 5월 초8일)

166) 『承政院日記』 6 인조 3년 5월 20일 1책 p.225

의 반발은 漸增하고 있었다. 왜란후 정부는 파탄에 빠진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전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대가로 禁亂塵權을 주었다.¹⁶⁷⁾ 즉 시전은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와 국가에서 제사를 실시할 때 및 官府의 각종 修理事業이 있을 때마다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했다.¹⁶⁸⁾ 그리고 그 대가로 非市塵系 商人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금난전권은 도감군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도감군들은 군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市役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독점 이윤은 확보하지 못한 채 시역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전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갔다. 그래서 이들은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금지시키든지, 아니면 도감군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시역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즉 인조 12년 정월 鞋塵 市民들이 도감군의 시전 침탈을 上言하면서 도감군도 시전과 동일한 시역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인조 14년 9월 特進官 金大德은 당시 명과 후금의 사신들이 계속 왕래하여 이들 사신 접대에 소용되는 물자를 시민들에게 조달하게 하니 시민들이 장차 潰散할 지경인데, 국역을 부담하지 않는 도감군들은 오히려 '專罔市利' 한다고 말하였다.¹⁶⁹⁾ 그래서 금난전권을 도감군에도 적용하여 시전의 殘民을 보호하자고 주장하였다.

인조대에 들어와 각 시전과 정부의 司憲府, 戶曹, 平市署

167) 姜萬吉, 1973 『實學者의 商業觀』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學校 出版部 p.24

168) 『磻溪隨錄』 권1 田制 上 (東國文化社 影印本 p.36)

169) 『承政院日記』 53 인조 14년 9월 19일 3책 p.461

등에서는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市役을 부과하여 市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도감군에게 충분한 급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업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겠지만, 당시의 국가 재정은 그렇지 못하였다. 부족한 급료를 지급하면서 상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시역을 부과하여 군인들의 원망을 살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국가가 위급할 시에는 더욱 군인들을 우대해야 하는 것이 국왕의 입장이었다. 결국 병자호란 이듬해인 인조 15년(1637)에 국왕 인조는 병자호란시 도감군들의 扈從之勞를 致賀하고 시민과 같이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이들에게는 收稅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다.¹⁷⁰⁾ 이는 선조대 도감군 許市 조치에 대한 재확인 이었던 것이다.

인조 15년의 위와 같은 국왕의 전교에 의해 인조대에서는 그후 더 이상 도감군의 상업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효종이 들어서자 이 문제는 다시 표면에 떠올랐다. 사헌부·호조·평시서 등은 ‘訓局之兵 獨非臣民乎’라고 반문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도감군들도 시전과 똑같이 국역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훈련도감에서는 처자를 거느리고 상경하여 부족한 급료로 서울 생활을 해야하는 도감군에게 차별없이 시역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러한 두 입장은 효종 원년(1650) 정월에 충돌하였다. 이때 도감군들이 자신들의 봉족 價布를 시전에 轉賣하려 하자 사헌부에서 禁吏를 보내어 그 價布를 빼앗아 屬公시키고 또 이들 도감군들을 囚禁治罪한 후 贖木을 징수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¹⁷¹⁾

170) 『訓局事例撮要』上卷 軍兵市業條 (顯廟朝 9년 2월 8일)

171) 『承政院日記』111 효종 원년 정월 10일 6책 p.255

이 당시 도감군의 봉족 價布는 도감군의 ‘過冬衣資’라는 명분으로 접수하여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하였다. 품질이 좋지 않은 가포는 품질 심사 과정인 點退에 의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도감군의 봉족 가포는 높은 상품성을 지녔고 도감군들은 이것을 당시 통용되는 常木으로 교환하여 생활하였다. 이것을 사헌부는 난전행위로 간주하여 치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훈련도감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즉 도감군들의 상업 활동 허용은 이미 50여년 전부터의 規例라고 주장하면서 형조·사헌부·한성부 등 三法司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도감군의 市業者를 侵責하지 말도록 조치해달라고 상계하였다. 이는 즉시 복벌을 계획하던 젊은 국왕 효종의 허락을 받았다.¹⁷²⁾ 그런데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단지 봉족 가포의 轉換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감군 중에는 수공업 기술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은 각종 상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도감군들이 제조 판매한 물종으로는 網巾, 絲帶, 纓子, 繩鞋, 南草, 烟竹, 雉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집 앞에 늘어놓고 장사를 하였다. 그리고 부유한 도감군들은 한단계 더 나아가 白木廬을 열어 시전에 참여하면서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도감군들은 봉족 가포를 판매하였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 白木廬은 綿布廬의 별칭으로서 六矣廬 가운데 두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 훈련도감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봉족의 가포를 常木으로 전환할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스스로 백목전을 만들었다. 도감군들은 당시 가장 질이 좋은 砲保木을 훈련도감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다시 백목전을 통해 판매하였던 것이다.

172) 『承政院日記』 111 효종 원년 정월 10일 6책 p.256

이와 같이 도감군들이 백목전까지 열어 상업 활동을 전개하자 더 이상 도감군들이 부족한 급료를 보충하기 위해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또 ‘大概 有業則有稅 兼竝他業 則隨事納稅 不易之法也’¹⁷³⁾라는 신료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였다. 이에 효종은 도감군의 부분 지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도감군에게 백목전 지역의 5분의 1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종 9년(1668) 훈련대장 이완은

先王(효종:필자주)은 도감군이 한편으로는 入番하고 한편으로는 操鍊을 하는데 市民과 일체로 差役하는 것은 過重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軍兵중 市業하는 자의 수와 本廳의 사람수를 참작하여 차역하는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훈련도감에서는 백목전 본전의 사람수가 250여 명이고 市業을 하는 軍人의 수가 단지 50여 명이므로 그 인원수를 비교하면 단지 5분의 1 밖에 안되므로 差役역시 마땅히 5분의 1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말씀드려 定奪되어 遵行되어 왔습니다.¹⁷⁴⁾

라 하면서 도감군이 백목전 지역의 5분의 1을 부담하게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비록 산술적인 규모에서는 도감군이 운영하는 백목전이 시민이 운영하는 백목전의 5분의 1에 불과했으나 실제 영업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도감군의 백목전은 ‘漸至熾盛’하고 시민의 백목전은 ‘漸至殘弱’하였던 것이다.¹⁷⁵⁾ 이러한 이유로 시민에게 부과된 백목전 요역이 도감군에게는 면제되

173) 『承政院日記』 권128 효종 4년 8월 23일 7책 p.237

174)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 (顯廟條 9년 2월 초8일)

175) 『承政院日記』 204 현종 8년 10월 초3일 11책 p.32

었으며, 또 도감군은 우수한 봉족 가포를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독점 이윤을 상실한 채 시역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의 불만은 多大하였다. 결국 현종 8년(1667)에 도감군의 시역 부담을 재조정하기에 이른다. 이때 백목전 시업 도감군은 米·布 등 재정적인 시역에는 백목전 시민과 동일하게 부담하고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역은 면제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⁷⁶⁾

그러나 숙종 원년(1675)에 이르러서 정부에서는 도감군의 상업 운영을 전면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숙종 원년 윤5월 大司憲 尹鏞는 ‘市民國之根本 市各有塵 兵民各異’라 하면서 시민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감군의 坐市亂塵을 철폐할 것을 국왕에게 요구하여 허락을 받았다.¹⁷⁷⁾ 그런데 이러한 윤희의 上言은 ‘實受市人金而入言也’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즉 시민들이 윤희에게 금을 주는 등 로비 활동을 하여 위 내용의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시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감군의 상업활동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독점 이윤을 확보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종래 도감군이 지니고 있었던 시패는 모두 환수되었고, 도감군이 운영하던 백목전도 모두 난전으로 지목되어 철폐되어야 했다.¹⁷⁸⁾

그러나 도감군들이 순순히 상업 활동을 포기할 리 없었다. 도감군은 상업 활동의 금지에 대한 원통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비변사에서는 다시 ‘砲手手持之物 則勿爲禁斷 家前小市 亦依前勿禁’¹⁷⁹⁾이라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런

176) 『訓局事例撮要』 上卷 軍兵市業條 (顯廟朝 9년 4월 26일)

177) 『肅宗實錄』 권4 숙종 원년 윤5월 丁酉 38책 p.282

178) 『備邊司謄錄』 33 숙종 3년 6월 24일 3책 p.301

179) 『承政院日記』 257 숙종 2년 11월 초8일 13책 p.597

데 비변사의 이러한 추가 조치에서는 手持之物에 대한 명확한 物種의 규정이 없었고, 또 家前小市 역시 애매한 표현이어서 도감군의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 의 효과가 없었다. 즉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다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감군은 심지어 市房을 借占하기 위해 시민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시전 방주가 시방을 전세 놓았을 때 도감군은 시민과 대립하면서 무력으로 이를 차지하였던 것이다.¹⁸⁰⁾

비변사의 애매한 규정에 의해 도감군의 상업 활동이 다시 전개되자, 三法司와 훈련도감이 대립하게 되었다. 즉 사헌부·한성부·형조 등에서는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전면 단속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 2년 10월 훈련대장 유혁연은 앞으로 도감군에게 허용된 이 ‘手持之物’의 매매를 무단으로 단속하는 삼법사와 亂塵禁吏를 軍門에서 처결하겠다고 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¹⁸¹⁾ 삼법사와 훈련도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훈련대장 유혁연은 전립과 망건은 지금까지 모두 도감군들이 발매하여 생활해 오던 것들이었는데 근래 망건전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 도감군의 所業을 탈취하려 하고 있으니 이 망건전을 혁파할 것을 요구하여 국왕의 허락을 얻었다.

유혁연의 위와 같은 건의에 대해 국왕의 허락이 내려지자 시민들은 숙종 3년 2월부터 일제히 閉戶撤業으로 저항하였다.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단속하려던 시도들이 無爲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撤市 저항에 대해 숙종 3년 5월 호조판서 吳始壽는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들의 취급 상품을 명

180) 『承政院日記』 260 숙종 3년 5월 2일 13책 p.780

181) 『承政院日記』 256 숙종 2년 10월 24일 13책 p.580

확히 규정할 것과 이들을 市案에 등록하여 시역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¹⁸²⁾

그래서 숙종 3년 6월 훈련도감에서는 ‘手持之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렸다. 즉 ‘수지지물’이란 ‘도감군들이 스스로 만든 물건과 기타 각종 所持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도감은 앞으로 이러한 물건을 팔고 있는 도감군을 난전이라 칭하여 法司에 고발하는 것은 시민의 죄로, 전과 같이 ‘呼朋 引類’하여 다량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시민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은 도감군의 죄로 처벌하겠다고 규정하였다. 또 훈련도감은 收稅 문제도 개정하여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坐市販賣’와 ‘移設小市’ 그리고 ‘家前小市’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수세량은 우선 ‘좌시판매’에 대해서는 도감군들이 入直, 習陣, 私習 등 군역 근무로 인해 開市하는 날이 1개월에 20일도 안되니 시전의 3분의 2를 내고, ‘이설소시’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내며, ‘가전소시’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수세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¹⁸³⁾

이러한 훈련도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철시 투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도감군들에 대한 특별 대우를 폐지하고, 자신들과 동일하게 通融應役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숙종 3년 8월 호조판서 오시수는 시민들의 撤市訴冤이 반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의 ‘市業之砲手 勿拘多少 一體許入於市案 使之通融應役’ 할 것을 주장하여 국왕의 승락을 받았다.¹⁸⁴⁾ 그후 숙종 3년 12월 20일 비변사에서

182) 『承政院日記』 260 숙종 3년 5월 19일 13책 p.796

『備邊司謄錄』 33 숙종 3년 8월 24일 3책 p.311

183) 『備邊司謄錄』 33 숙종 3년 6월 24일 3책 p.301

184) 『承政院日記』 261 숙종 3년 8월 23일 13책 p.900

는 도감군과 시민이 일체로 응역할 것을 명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 시끄럽게 呈訴하는 자는 도감군과 시민을 논하지 않고 違令之罪로 다스리겠다고 하여 이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¹⁸⁵⁾

이상과 같이 도감군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 임무 이외에도 서울에서 상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비시전계 상인의 대두를 의미하였으며, 조선후기 서울의 상업 인구 증가와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이었다.

5. 맺 음 말

훈련도감은 조선후기 최대의 중앙 군영으로서, 조선후기의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미친 영향은 多大하였다. 또한 훈련도감의 출현은 조선의 軍制·軍役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른 군영이나 지방군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특히 17세기에는 대략 5,000명 정도의 도감군이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 상주하면서 군무에 임했기 때문에 당시 서울의 인구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17세기 훈련도감의 설립과 군제의 개편, 도감군의 충원과 그 신분, 그리고 도감군의 임무와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훈련도감의 설립은 임란중 砲手의 양성에서 비롯되었다. 임란 초전에 조총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정부는 즉시 포수의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조 26년(1593) 10월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이후 훈련도감은 확실한 지휘

185) 『訓局事例撮要』上卷 軍兵市業條 肅廟朝 3년 丁巳 12월 24일

편제와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紀效新書』의 군사 편제와 전법을 채택하였다. 조선초기에는 고려말 權臣이 병권을 잡는 폐단을 革去하기 위한 군제 개혁으로서 병농일치에 따라 군인이 번상하면 그때마다 새롭게 군인을 편제하였고, 새로운 지휘관을 정하였다. 그러나 임란으로 인해 이러한 군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의 군제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창설당시 훈련도감은 포수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기효신서』의 三手技法에 따라 殺手, 射手를 添設하였다. 그러나 훈련도감의 三手兵 중 포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우도 특별했다. 이에 반해 사수의 대우는 포수보다 뒤떨어졌고, 정원도 극히 적게 책정하였다. 이것은 弓矢를 위주로 하는 종래의 무기 체제에서 銃砲를 위주로 하는 무기체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하에 射手·武士의 해체도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훈련도감은 설립 당시 모집에 의해 군인을 충원하였다. 그러나 募兵에 의한 군대의 운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임란 초기의 혼란이 지나가고 사회가 정상을 되찾으면서 사람들은 도감군이 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도감군은 長番으로 휴식이 없었고, 將官들에 의해 여러가지로 침학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인 모집을 독려하였으나, 도감군은 서울안의各司 典僕이나 私賤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선조 36년(1603) 왕자들이 도감군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해 모집에 의해 입속된 상당수의 도감군이 궁가·권세가의 私奴·投托人

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의 도감군 입속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감군 충원 방식을 募集에서 陞戶制로 전환하였다. 한편 도감군의 충원은 式年마다 실시되는 승호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부정기적으로 別陞戶, 京募集을 통해 군인을 충원하기도 하였다.

훈련도감 설립시 모집된 군인 내에는 公·私賤, 良人, 禁軍 등 다양한 신분층이 혼재되어 있었다. 賤人이 훈련도감에 입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전기 군역제의 원리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었다. 도감군 입속에 천인을 허용한 것은 군액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奴主들은 자신의 奴가 훈련도감에 입속하는 것을 꺼렸고 심지어 입속하는 노를 죽이기까지 하였다. 한편 私奴들도 주인에 반항하면서 훈련도감에 입속하였다. 이들은 자신을 侵虐하는 주인을 고발하였으며, 자신의 주인을 保人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훈련도감에 사천의 입속이 허용되자 노주와 노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한편 정부내에서도 훈련도감의 사천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거듭되었다. 이것은 노비제 폐지론과 노비제 유지론으로 대립되었다. 이러한 奴主와 奴의 갈등, 노비제 폐지론과 노비제 유지론의 대립은 선조 36년의 宮家 私奴·投托人 사건으로 인해 奴主와 노비제 유지론자의 승리로 귀결되고 만다. 이때 국왕은 궁가 사노·투탁인 명단을 보고받고, 私賤 신분의 도감군을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앞으로 이들의 도감군 입속을 철저히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승호제를 실시하여 사천의 입속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 하였다.

승호제가 실시된 이후 도감군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양인 농민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처지도 종전에 모

집에 의한 군인들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각 지방에서 힘없이 승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서울 변두리나 각 관아의空塚에 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중앙군이라는 지위로 免稅·免役되었다.

도감군은 주로 미천한 신분으로서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으며, 서울 거리에서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낮에 때를 지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밤중에 공연히 총포를 쏘면서 도성민을 놀라게 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禁軍을 집단 구타하거나, 禁吏를 잡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감군의 무력 과시와 난폭한 행동은 문반 관료들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이들의 군제 개편 요구의 한 원인이 되었다.

도감군은 급료와 보포를 지급받으면서 국왕의 시위, 서울의 警備와 防衛, 북방으로의 赴防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우선 도감군은 국왕 측근에서 시위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평상시 국왕의 殿座 주위를 호위하며, 궁궐 각문을 把守·入直하였다. 또 국왕이 궁궐 밖을 거동할 때 행렬 앞에서는 僻除와 傳語 활동을 하였고, 행렬 중간에서는 국왕의 전후좌우에서 호위하였다. 또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궁궐 전체의 수비를 담당하였다. 17세기에 御營廳, 禁衛營 등의 군영이 증설됨에 따라 도감군은 이들과 업무를 분담하지만 국왕의 호위에서 도감군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감군은 이와같이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向背는 정권의 운명과 관계되었다. 만약 이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에 반기를 들었을 때 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감군의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왕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부심하였다. 이에 정부는 도감군의 정치 개입 차단, 군율의 강화와 아울러 이들에 대한 우대라는 양면책을 구사하였다.

국왕의 시위와 더불어 도감군의 중요 임무로는 서울의 경비와 방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5영의 설치로 체계화되었다. 5영은 南營·北營·左營·右營·中營으로 나뉘었는데, 도감군들은 여기에 입직하면서 궁궐의 수비와 서울의 방위 임무를 맡아 보았다. 한편 도감군은 捕盜廳이 부실하고 도적이 횡행할 때 捕盜·巡邏 업무도 수행였다. 한편 도감군은 평안도와 함경도로 赴防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임란시 각 戰場에 투입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도감군은 당시 국내에서 가장 정예병으로 인식되어 임란시 각 전장으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임란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되어 여진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北道로 부방하게 되었다. 도감군이 赴防할 때 도감군의 월급은 전액 서울에 사는 가족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도감군의 부방은 병자호란이 끝난 후 없어지게 된다.

주로 서울의 빈민들로 구성된 도감군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료와 保布가 서울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자 근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훈련도감 설립 직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급료를 지급할 수 없었던 정부로서도 이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광해군대를 거쳐 사회가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전과 도감군의 상업 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들간에 마찰과 분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내에서도 시전을 보호하고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억제 금지시키려는 司憲府·戶曹·刑曹·漢城府·平市署와 도감군의 상업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려

는 訓練都監의 대립도 격화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17세기말 도감군도 동일하게 市役을 부과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非市廛系 商人의 대두를 의미하였으며, 조선후기 서울의 상업 인구 증가와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훈련도감은 조선전기의 군제·군역제와는 달리 신분이 낮은 자들을 그 군인으로 충원하고, 이들에게 給料과 保布를 지급하여 서울에 상주하면서 군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군제·군역제가 조선전기의 중세적인 형태에서 근대적인 형태로 이행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도감의 등장은 조선후기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서울의 변화·발전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